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술인에 대한 근로자 권리 인정 등〉

■ 양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939호)

2026.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예술인에 대한 근로자 권리 인정 등(안 제1조, 제2조제2호의3, 제3조제2항·제5항)	3
2.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사전 안전교육 실시(안 제7조의2 및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	16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예술인의 피해 구제 지원 등 추가(안 제10조제1항제11호)	2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양문석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2. 23.
3. 회 부 일 : 2026. 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의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의 상당수가 공연, 리허설, 촬영 등 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자로서 실질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만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실제로 2023년에 발생한 세종문화회관 무대추락 사고 등 예술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수준으로 법적 사각지대가 매우 큼.

이에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법에 명시하고, 예술인을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 활동 중 재해를

입은 예술인의 피해 구제 지원 및 재해의 조사·연구 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였음(안 제7조의2 신설 등).

III. 검토의견

1. 예술인에 대한 근로자 권리 인정 등(안 제1조, 제2조제2호의3, 제3조제2항·제5항)

개정안은 현행법의 목적에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추가하고(안 제1조), 예술 활동의 정의를 추가적으로 신설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3 신설).

아울러, 예술인이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와(안 제3조제2항),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3조제5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u>지원</u> 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지원 및 안전과 생명권 보호</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의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예술 활동”이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현행	개정안
3.·4. (생략)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생략)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④ (생략) <신설>	말한다. 3.·4. (현행과 같음)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신체적 안전-----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모든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권리를 가진다.

현행법 제2조제2호¹⁾는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1)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2의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예술인 중 전업예술인을 고용형태에 따라 구분해 보면 일용직·파트타임·시간제가 3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6.0%, 기간제·계약직·임시직·축탁직 22.5% 순임.

< 전업 예술인의 고용형태(2024년 기준) >

일용직·파트타임·시간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기간제·계약직·임시직·축탁직	정규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기타
30.4%	26.0%	22.5%	5.4%	5.0%	10.7%

※ 출처 : 「2024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5. 3.

「근로기준법」 2)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음³⁾.

이에 따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재단법인의 바이올린 파트 단원⁴⁾, 뮤지컬 공연의 배우⁵⁾ 등 정규직이 아닌 예술인들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 반면,

노동위원회가 뮤지컬 공연의 배우들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⁶⁾한 사례가 있는 등 정규직이 아닌 예술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

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4) [서울행정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합57727]

5)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83571]

6) [노동위원회 2022부해000_50499, 2022. 11. 2(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하는지는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프리랜서 고용 형태의 예술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와 같은 사회보장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비록, 현행법 제7조제2항7)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 예술인이 ‘중·소기업 사업주’ 방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⁹⁾할 수밖에 없어 사업자가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¹⁰⁾하는 근로자에

7) 「예술인 복지법」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50%~90%를 환급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2026년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원 예산은 4억 7,500만원임(산출단가: 4,400명 × 9,000원 × 12개월)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④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

비해 불리한 상황임.

이에 2024년 기준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비율은 23.5%로 2021년 28.5%에 비하여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가입한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¹¹⁾

한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11) 「2024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5. 3.

법」상의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210호, 정혜경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법적·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2023년에 발생한 세종문화회관 무대추락 사고¹²⁾ 등 관련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화 및 근로자성 인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예술인의 생명권 보호를 목적조항에 추가하고, 예술인이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도록 명시하여, 현행법의 지향점을 반복되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예술인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까지 확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아울러, 개정안은 예술인이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하여, 예술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에 포섭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¹³⁾되어 예술인

12) “400kg 무대장치에 깔려 하반신 마비...30대 성악가 결국 사망”, 중앙일보, 2025. 10. 25.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제한, 해고예고제도의 적용¹⁴⁾, 「최저임금법」¹⁵⁾에 따른 최저임금의 보장 등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예술인들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예술인들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체불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¹⁶⁾할 수 있어, 임금 체불로 인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5) 「최저임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16)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경제적 불이익과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을 해소할 수 있어 예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안 제3조제5항은 모든 예술인이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원이 있거나 고용원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여 자영업자¹⁷⁾에 해당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가입대상 자영업자)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 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나.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나.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인정하는 것에 관하여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첫째,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관하여는 예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술인의 안전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술인 복지법」에 비하여 예술인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¹⁸⁾에서 이미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신체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개정 실익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함.

둘째, “예술 활동”의 정의규정 신설에 관하여는 「예술인 복지법」은 직업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을 보호하고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예술 활동 범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1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①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④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예술 활동’은 직업적 예술 활동 여부와 관계 없이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어 법률의 보장 범위가 서로 상이하므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예술 활동’ 조항¹⁹⁾을 준용하여 ‘예술 활동’ 정의 규정을 신설할 경우 취미 및 아마추어 예술 활동 등 직업적 예술 활동이 아닌 활동까지 포함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셋째, 모든 예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권리 부여에 관하여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따른 직업적 권리와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모든 예술인을 일률적으로 근로자로 규정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 온 기존 노동법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사회정책적 법률인

19)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 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예술인 복지법」에 노동관계법의 관련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를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모든 예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게 된다면 모든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이 근로계약이 되어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프리랜서 사업자에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게 될 경우 근로시간, 장소 등을 사용자가 지정할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는 노동관계법상 조항²⁰⁾과 실제 예술 현장에서의 실무 관행 불일치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모든 예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권리 부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인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포괄하게 될 소지가 있으

20)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며, 부여되는 권리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보호 대상·내용이 불명확해 질 우려가 존재하며,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²¹⁾, 유사 중첩적인 사항의 규율에 대하여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사용자’에 대응하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바, 개정안에서는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선언적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함.

21) 「예술인 복지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2.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사전 안전교육 실시 (안 제7조의2 및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

개정안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으로 하여금 예술인이 신체적 안전·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사전 안전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안 제7조의2),

사전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8조제1항제4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안전관리 의무 등)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예술인이 신체적 안전·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과태료) ① ----- ----- -----.

현 행	개 정 안
1. ~ 3의2. (생 략) <u><신 설></u> 4. (생 략) ②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조제4호²²⁾에 따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주”²³⁾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²⁴⁾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

22)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2의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23)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하며, 해당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²⁵⁾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함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인으로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아니함.²⁶⁾

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5)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에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예술인에 대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사전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여, 예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보다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됨.

공연장의 경우 「공연법」 제11조의3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두도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커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 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록 규정하고 있지만 하위법령에서 안전관리조직의 구체적 직무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²⁷⁾이어서 여전히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사전 안전교육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는 공연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개정안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의무 이행 확보수단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²⁸⁾도 사업주가 정기적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27) 「공연법」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8)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위반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제재로 보임.

한편, 안 제3조제5항이 입법화되어 모든 예술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를 가지게 되면, 예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²⁹⁾에 포섭되는 근로자가 되므로 안 제7조의2의 규정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예술 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적인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안전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술 분야별로 산업환경과 위험 요인이 상이하여 안전관리와 교육은 해당 예술 분야의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개별 소관 법률을 통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9)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아울러, 영화 분야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³⁰⁾에서 영화업자가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의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중문화 분야의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³¹⁾에서 대중문화 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 기본적인 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공연 분야의 경우 「공연법」에서 공연장 안전관리, 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연예술작업자가 안전한 창작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³²⁾하고 있으며,

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 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적 인권(이하 “기본적 인권”이라 한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4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2) 「공연법」

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①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안전관리비) ①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안전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이에 공연장 운영자 등은 공연장 시설·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예술인의 피해 구제 지원 등 추가 (안 제10조제1항제11호)

개정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사업에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예술인의 피해 구제 지원 및 재해의 조사·연구를 추가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10. (생략) <u><신설></u> 11. · 12. (생략) ② (생략)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예술인의 피해 구제 지원 및 재해의 조사·연구 12. · 13.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³³⁾

33) 「예술인 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세부적으로, 현행법 제7조³⁴⁾에 따라 재단이 예술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재단 사회보험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청구 등의 방법을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³⁵⁾

즉 안 제10조제1항제11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³⁶⁾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예술인의 피해 구제 지원 업무는 현재도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 이를 재단의 사업내용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 3의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 4의2.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4) 「예술인 복지법」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5) 출처 : 예술인 산재보험 홈페이지(<https://wci.kawf.kr/Main.do>)

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등을 정부의 책무로 하며 해당 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⁷⁾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조사·연구는 정부의 책무에 포함되므로 해당 업무는 기타공공기관인 재단의 사업에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보여짐.

개정안과 같이 재단의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예술인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히 파악될 수 있어 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이 개선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7)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활동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 지원 및 관련 연구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나,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³⁸⁾

재해의 조사·연구 등의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업무에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로 포괄하여 규정³⁹⁾하고 있어 개정 실익 낮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

38) 「예술인 복지법」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9) 해당 규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2023년, 2024년 대중문화예술분야 및 문학·만화 분야에 대한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를 실시한 바 있음.

참고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및 지원 현황

□ 제도 개요 및 지원 현황

-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라, 프리랜서 예술인은 중소기업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12년~/보험료 전액 예술인 부담)
- (가입절차) 예술인이 직접 보험등급(16,570~70,180원/1~12등급)을 선택·가입
- (가입혜택)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생활비), 장애급여, 직업재활급여 등
- (지원) 기존가입 활성화 및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50% 지원, ▲예술인복지재단 보험사무 대행, ▲산재청구 전문가 연계 상담 지원 등

<사업명 :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산재보험)>

구분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
'23년	50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보험료 지원 및 보험사무 대행, 홍보 및 산재청구 상담 지원 등
'24년	500		
'25년	1,000		

※ 관련통계

▶ 가입·지원 실적 : 유효가입 4,858명, 누적 15,155명('25.12월, 복지재단 사무대행 기준)

(단위: 명, 원)

구분	유효 가입자수	누적 가입	보험료 지원인원	지원금액
2022년	5,836	10,890	5,002	372,892,440
2023년	5,188	12,521	4,508	475,850,040
2024년	4,892	13,792	4,239	453,443,390
2025년	4,858	15,155	4,251	501,382,940